

법정 통역인 편람

싱할라어(ශංහල)



법원행정처

목 차

제1편 법정 통역인의 주의 사항	07
제1절 일반적 주의 사항	07
제2절 제1회 기일 전 준비	08
제3절 법정 통역	08
제2편 형사절차	13
제1장 형사절차의 의의 및 개요	13
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	13
제2절 형사절차의 개요	13
제2장 수사절차	13
제1절 수사단계	13
제2절 공소제기	20
제3장 형사공판절차	21
제1절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21
제2절 공소장 접수와 공판 전 절차	22
제3절 공판절차	23
제4절 항소심 절차	46
제3편 민사소송절차	51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51
제2절 소송절차의 진행	52
제4편 신청사건	69
제1절 보전처분 절차의 개요	69
제2절 보전처분의 의의	70
제3절 종류	70
제4절 보전처분절차의 진행	71
제5절 채무자의 구제	73
제5편 가사절차	77
제1절 가사재판의 개요	77
제2절 협의이혼절차 안내	78
제3절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85
제4절 기타 안내	96



제1편

법정 통역인의 주의 사항



제1절 ● 일반적 주의사항

1.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통역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의로 거짓 통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재판의 질은 소통에 달려 있고, 통역인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귀와 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역의 성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충실향한 통역을 위하여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대하여도 평소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재판은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역인도 통역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 등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의 통역인은 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통역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접촉해 올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통역인은 재판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건관계인이나 가족에게 재판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 이상의 상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나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향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인의 개인적인 경험 등으로 재판의 가능성이거나 향후의 절차 등을 이야기하면, 사건관계인이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통역인은 사건관계인의 조언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할 사항

통역인은 판사, 검사 또는 당사자 등의 대변인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이들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신문, 훈계, 주장, 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동문서답을 하거나 말실수, 불평이나 법정 모욕적 언사, 불필요한 말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통역하여야 하고, 잘못의 지적이나 정정은 판사나 당사자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

제2절 ● 제1회 기일 전 준비

법원에서는 통역인들에게 정확한 통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1회 기일 전에 공소장이나 소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한 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다. 통역의 정확성을 기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판 관련 서류는 미리 읽어보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음으로 법정 통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사건의 법정 통역 과정을 방청하거나 법정 통역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절 ● 법정 통역

1.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 충실히 통역하여야 한다.

재판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이나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각 질문의 닉 앤스 등에 충분히 주의해서 답변자의 말을 충실히 통역하여야 한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취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다만 재판부에서 요약적 통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한 통역을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가기 전에 메모지를 준비하였다가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리이러합니다.”라는 직접화법으로 통역을 하여야 하고, “이리이러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라는 간접화법으로 통역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국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외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과 상담하여야 한다.

2. 질문이나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통역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는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통역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신문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당사자나 증인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이 빨라 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 가거나 대충 처리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알림으로써 통역인 스스로가 질문이나 답변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즉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질문의 경우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로 하여금 질문을 쉽게 변경해서 묻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

3.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 통역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원래의 질문 취지에 맞추어 통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를 통역한 후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면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질문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기도 하고, 질문자인 검사나 변호사 등에게 질문의 내용을 쉽게 바꾸어 묻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하는 측과 답변을 한 측이 서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역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피로로 인하여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신의 휴식 패턴을 미리 법원사무관 등에게 알려주어 통역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서면의 사전 입수

공소장, 피고인(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증인 신문사항 및 반대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등 절차의 진행이 주로 서면의 낭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서면을 받아 먼저 검토한 후 통역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역에 도움이 된다.

5. 판결 주문에 대한 사전 이해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의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외국인인 피고인 또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것이지만, 통역인으로서는 이 책자의 판결 문언 및 전문용어를 미리 익혀두어야 효과적인 통역을 할 수 있다.

제2편

형사절차



제2편 형사절차

| 제1장 | 형사절차의 의의 및 개요

제1절 ● 형사절차의 의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이다.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고,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제2절 ● 형사절차의 개요

형사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수사단계’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둘째 단계는 ‘재판단계’로서, 법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여부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다.

셋째 단계는 ‘집행단계’로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 제2장 | 수사절차

제1절 ● 수사단계

1.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크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으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등으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2.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고, 고소, 고발, 자수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 인지(認知) 등을 통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 피의자와 피고인 ■

▶ 피의자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라고 하고,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 피고인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3. 수사기관의 조사

가. 피의자의 조사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수사가 진행 중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재판 진행 중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 체포의 종류 ■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현행범 체포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등의 조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 즉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한다.

■ 진술서와 진술조서 ■

'진술서'는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진술서의 경우는 작성자가 참고인 자신이고, 진술조서의 경우는 작성자가 수사기관이다.

다. 그 밖의 조사

수사기관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을 조사, 검증(현장 검증 등)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여 감정(필적, 지문감정 등)을 실시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를 하기도 한다.

■ 실황조사서와 검증조사 ■

▶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조사한 것을 기재한 서류로,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충돌한 차량의 위치와 거리, 자동차 바퀴의 흔적, 부서진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서류이다.

▶ 검증조서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이다. 검증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서와 같은 경우도 있으나, 검증은 강제처분의 하나로 영장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절차면에서 실황조사서와 구별된다.

4. 피의자의 구속

가.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나. 영장실질심문절차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체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인한 후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체포절차 등 수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한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그 피의자가 해독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이 교부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의자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ሚදිනයෙකු ලෙස තීර්ණවා සිටිමට හේ කිසිදු ප්‍රශ්නයකට පිළිතුරු දීම ප්‍රතික්ෂේප කිරීමට සහ වාසියායක කරුණු පකාශ කිරීමට ඔබට අයිතියක් ඇත. ප්‍රශ්නවලට පිළිතුරු දීම ප්‍රතික්ෂේප කිරීමෙන් පමණක් ඔබ අගනියට පත් නොවන ඇත.

(2) 인정심문

(3)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혐의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가 청구된 범죄사실은 (당시 그가 청구된 범죄사실) 혐의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4) 피의자에 대한 심문

- 피의자는 어떤 경위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에 대하여 고지 받았습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합니까?
당시 그가 청구된 범죄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피의자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피의자는 적법하게 한국에 머무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피의자는 언제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피의자는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친척이 있습니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5) 관계인의 의견 진술

-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6) 피의자의 의견 진술

-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7)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고지 및 심문종결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여부와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전 보석결정’이라고도 한다.

- 피의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다시 한번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 이상으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8)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

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수사의 종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면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다만 수사기관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검사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에는 수사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다.

불기소처분에는 수사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혐의 없음’,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정신상 질병 등의 사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죄가 안됨’,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공소권 없음’, 범행사실은 인정 되지만,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굳이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내리는 ‘기소유예’,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어려운 때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가 있다.

제2절 ●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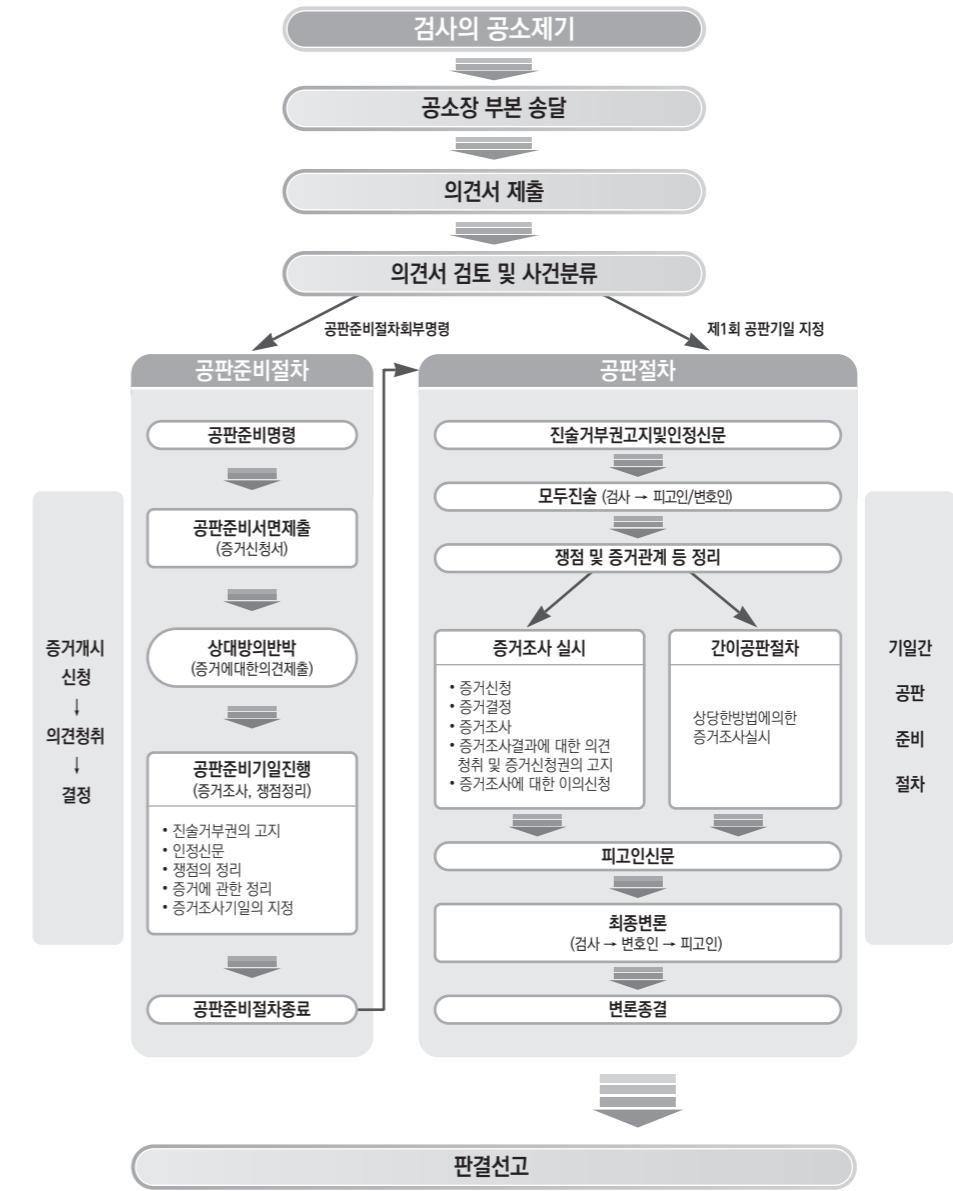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방식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구하는 방식(보통 ‘구공판’이라고 한다)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보통 ‘구약식’이라고 한다)이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의 신분 역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다.

| 제3장 | 형사공판절차

제1절 ●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제2절 ● 공소장 접수와 공판 전 절차

1. 사건 배당

공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합의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말하고, 단독사건은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인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인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그 외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다만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일부 등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2. 공소장 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는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 재판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한다.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번역인을 선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한 후 그 번역문을 국문 공소장과 함께 송부한다. 이 외에도 법원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도 함께 송부한다.

한편 통역인이 선정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도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별도로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한편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공소장과 함께 우편으로 받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판사에게 청구하면 된다.

4.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공소장과 피고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공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6.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공판 준비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발송되며,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된다.

제3절 ● 공판절차

1. 공판절차와 통역인의 의무

공판절차는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절차이다. 공판은 국어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통역이 필요하게 된다. 법원은 통역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미리 통역인을 지정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고 있다.

통역인은 각급 법원에서 대상자의 통역 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통역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성명, 직업, 주소, 학력,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며,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된 선서서에 의하여 허위 통역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2. 모두절차(冒頭節次)

가. 개정선언 및 사건 호명

- 지금부터 ○○법원 형사○○단독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අධිකරණයේ අපරාධ කටයුතු පිළිබඳ ○○ වැනි තනි විනිශ්චරු මධුල්ල උදේ සැසිවාරයේදී දැන් ආරම්භ වේ.
 - ○○고단○○호 피고인 ○○○
 ○○○ඡාක දරණ විත්තිකරු

나.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인정신문(人定訊問)

재판장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성명,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을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 피고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캬우캬라 빌리 쟈미嫔라즈 난모 쟈磔난 캄난.
 -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캬우캬라 빌리 릴판노 디나이 쟈磔난 캄난.
 -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캬우캬라 빌리 레끼야와 쟈磔난 캄난.
 - 피고인의 한국 내 주소는 어디입니까?
 캬우캬라 딸쿄우 케아리야와 빌리 빌리 쟈磔난 캄난.
 - 피고인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캬우캬라 빌리 헤이타이난 와이 쟈磔난 캄난.

라. 주소변동사실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는^는 니^는 죄^를 저^었을^라 나^는 출^석하^야 한^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야 한^다. 재판^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데 이를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만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검찰 측,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පැමිණිල්ල විසින් දැන් ලේඛනා, වරදෙහි නම සහ අභ්‍යුත් විධි විධාන කියවනු ඇත. (හෝ “කරුණාකර ලේඛනාරෝපණයේ සාරාංශය සඳහන් කරන්න.”)

바.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하게 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은 크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심신상실 등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할 수 있다.

- 피고인, 공소장을 받아보셨지요?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위�는지킬라, 윗ට 아ධිවේදනා ලැබේ තිබේද? විත්තිකරු දැන් වේදනා සමඟන්ධයෙන් තම මතය එකාගු කරනු ඇත. (නැතහොත් ‘ඔබ වේදනාව පිළිගන්නවාද?’)

사.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

피고인 측의 최초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증거조사절차

가. 증거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증이에 대한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은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디즈니+ 쿠�퍼 퀸비가 애니메이션 영화 '아바타'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디즈니+ 쿠�퍼 퀸비의 디즈니+ 계정에 접속한 증거입니다.

나.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신청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진술서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진정 성립 및 임의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경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추가로 내용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 또는 ‘부동의’ 중 하나로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증거는 증인신문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보셨지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증거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로, 피고인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또는 아래와 같이 재판장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나요?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고문을 당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 하였는가요?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에 대한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그 증거서류를 공소사실의 판단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대개 검사가 그 진술조서의 원래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는가요? 또는 참고인들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기를 원하는가요?

විත්තිකරු ලිඛිත ප්‍රකාශය, සේවා විමර්ශන වාර්තාව සහ අභිවේදනාකරු විසින් ඉදිරිපත් කරන ලද ००० පිළිබඳ සඟල්පන වාර්තාව සාක්ෂී ලෙස භාවිත කිරීමට එකඟ වන්නේ නම්,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මෙම ලියකියවිලි බෝද්දා සම්බන්ධයෙන් තීරණයක් ගැනීමට සාක්ෂී ලෙස සලකනු ඇති. විත්තිකරු එකඟ තොට්ත්තෙන් නම්, අභිවේදනාකරු විසින් ප්‍රකාශයන් කළ තැනැත්තාව අධිකරණයේදී ඔහුට / ඇයට ඇඟුමකන් දීමට පෙනී සිටින ලෙසට යොජනා කරයි.

පැමිණිලිකරු විසින් ඉදිරිපත් කරන ලද තෙවන පාර්ශවීය සාක්ෂිකරුවන්ගේ ලිඛිත ප්‍රකාශ සාක්ෂි ලෙස භාවිතා කිරීමට වින්තිකරු එකඟ වේද? නැතහොත් තෙවන පාර්ශවීය සාක්ෂිකරුවන් විභාග කිරීම සඳහා මෙම අධිකරණයට කුඩාවම් බෙබඳ ඇතුළුයේ?

다. 증거채부결정

피고인의 의견 진술 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나 피고인의 의견 진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구비된 증거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처럼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증인신문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구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채부의 결정을 보류하였다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증거능력 유무가 확실해진 후에 채부결정을 한다.

- 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목록 순번 ○, ○, ○번의 증거는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 ○, ○번입니다. 검찰 측은 추가로 증거신청을 하시겠습니까?

විත්තිකරු එකඟ වූ ප්‍රදරුණන ආක 〇,〇,〇,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පිළිගනු ලැබේ. ප්‍රදරුණන 〇,〇,〇, සඳහා විත්තිය එකඟ නොවීය. පැමිණිල්ලට අමතර සාක්ෂි ඉදිරිපත් කිරීමට අවශ්‍යයද?

(검찰 측 증인신청 이후)

-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 ○○○을 채택하겠습니다.
○○○, ○○○씨에게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증거신청인(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정에서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야 하고, 증거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낭독에 의하여, 증거물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증거 내용을 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에 있어서 서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고지 또는 열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 채택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අධිකරණය දැන් පිළිගත් සාක්ෂි ලේඛන සහ සාක්ෂි අධිතම පරික්ෂා කරනු ඇත.

- 검사는 제출된 증거서류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증거조사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පූමිණිලිකරු විසින් ඉදිරිපත් කරන ලද සාක්ෂි ලේඛන දැන් කියවනු ඇත (හෝ ‘පූමිණිලිකරු දැන් සාක්ෂි ලේඛනවල සාරාගය සපයනු ඇත’ හෝ ‘සාක්ෂි විභාගය කියවීමෙන් ඉදිරියට යනු ඇත).

-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පැමිණිලිකරු දැන් සාක්ෂි අයිතම ඉදිරිපත් කරනු ඇත.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 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하거나 증거물을 제시함)

마. 증인신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제3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지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1) 증인신문에 대해 놀음을 명한 경우 이에 대한 고지

-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අපරාධ නඩු විධාන පනතේ 56-2 වන වගන්තියේ 1 වන තේදිය යටතේ සාක්ෂිකරුවන්ගේ විහාර ක්‍රියාපට්පාටිය සම්පූර්ණයෙන් සටහන් කරන ලද අධිකරණය මෙයින් නියෝග කරයි.

විභාගය අනුරත්නරදී කරන ලද සියලුම ප්‍රකාශ සටහන් කරනු ලැබේ. එම නිසු, ප්‍රකාශයක් කරන විට කරුණුකර ඕමෙන් තොල් මධ්‍යිකාගේන්යට සම්පූර්ණ කරන්න.

(2) 증언거부권의 고지

- 증인은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සාක්ෂිකරු ලෙස ඔබ හෝ ඔබේ තැදු දින් කිසිවෙතු වර්ධකරු ලෙස පෙනී යන හෝ ව්‍යාපාර කටයුතු වලදී ඔබ දැනුවත්ව සිටි වෙනත් කෙනෙකුගේ රහස්‍ය තොරතුරු හෙළිවන ඒ හා සමාන අවස්ථාවකදී ඔබට සාක්ෂි මේ ප්‍රතික්ෂේප කළ නැතිය.

එම හේතු නිසාම, දිවුරුම දීමෙන් පසු විහාග සඳහා ඔබගෙන් අසන එක් එක් ප්‍රය්‍රනය සඳහා ඔබට සාක්ෂි දීම ප්‍රතික්ෂේප කළ ගැනීය.

(3) 위증의 벌을 경고

-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දැන්, සාක්ෂිකර ඔහු (ඇය) අත්විද ඇති දේ සඳහා ලෙස හා නිවැරදිව සාක්ෂි දීමට දිවුරුම දෙනු ඇත. සාක්ෂිකරු, එම දිවුරුම දීමෙන් පසු, ඔහු (ඇය) තමා අත්විද නැති දෙයක් අත්විදින ලදුය සාක්ෂි දරන්නේ නම් හෝ ඔහු (ඇය) පැහැදිලිව මතක නැති දේ පැහැදිලිව මතක බවට සඳහන් කළ හොත් අධිකරණය නොමග යුතිමේ වරට සාක්ෂිකරුට ද්‍රව්‍යම ලැබෙන ඇත

- 증인이 지난 제○차 공판기일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아직 유지되므로,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නඩු විභාගයට පෙර සාක්ෂිකරු කළ දිවුරුම තවමත් වලංගු බැවින්, ඔබ සත්‍ය කරා නොකරන්නේ නම් අධිකරණය නොමහ යුතිමේ වරදට සාක්ෂිකරුට ද්‍රව්‍ය ලැබෙනු ඇත.

(증인은 법정에 비치된 선서서 양식에 기재된 아래 문구를 낭독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මාගේ හඳු සාක්ෂීයට අනුව සල්‍යා, සම්පූර්ණ සල්‍යා සහ සල්‍යා තුරු අන් කිසිවක් නොකියන බවත මම දිවුරා පෙළරුන්ද වෙමි. මගේ ප්‍රකාශයේ කිසියම් අසල්‍යක් තිබේ නම්, අධිකරණය නොමත යැවිමේ වරදව මට දැඩිවම් ලැබෙනු ඇතුළු.”

(4)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신청인이 먼저 질문을 하고 증인의 답변을 듣고(주신문), 이어서 상대방 측이 질문을 하고 증인의 답변을 듣는(반대신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 검찰 측,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දැන්, පැමිණිල්ලට විහාගය ආරම්භ කළ හැකිය.
 - 피고인 측,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දැන්, විත්තිකරුට හරස් ප්‍රශ්න ඇසීම ආරම්භ කළ හැකිය.

바.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등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피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සාක්ෂි විභාගයේ ප්‍රතිඵල සම්බන්ධයෙන් ඔබට යම් අදහසක් හෝ විරෝධයක් තිබේ?
 - 피고인은 유리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증인 그 밖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වින්තිකරු තමාට (අයට) එකීඩියක වන ඕනෑම ලියවිල්ලක් හෝ දෙයක් ඉදිරිපත් කළ හැකිය, නැතහොත් සාක්ෂිකරුවෙකු හෝ සාක්ෂි පිළිගැනීමට යෝජනාවක් ඉදිරිපත් කළ හැකිය. ඉදිරිපත් කිරීමට ඔබට සාක්ෂි තිබේ?

4.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진행된다.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통역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재판부에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දැන් ඔබට (වත්තියේ නීතිඥවරයාට) විත්තිකරු පරික්ෂා කළ හැකිය.

5. 기타 공판진행절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하다.

- 검사로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읽어보았습니까?
අධිවේදනා පත්‍රය සංශෝධනය කරන ලෙස අභිවේදනාකරු ඉල්ලා සිටියේය. අධිවේදනා සංශෝධනය කිරීමේ ඉල්ලීම් විත්තිකරු කියවා තිබේද?
-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අධිවේදනා සංශෝධනය කිරීම සඳහා පැමිණිල්ලේ ඉල්ලීම් ගැන විත්තිකරුට යම් අදහසක් තිබේද?
-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අධිවේදනා සංශෝධනය කිරීම සඳහා පැමිණිල්ලේ ඉල්ලීමට අවසර ලබා දෙනු ලැබේ.

나. 공소의 취소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소송 도중에 철회 내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서면으로 또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다.

-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අධිවේදනා පක්‍රේ 2 වන ජේදය යටතේ ඇති වේදනා පැමිණිල්ල විසින් ඉල්ලා අස්කර ගෙන ඇති අනර එම කොටස නිෂ්පූහ කරනු ලැබේ.

다. 간이공판절차 회부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자백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자백한다고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통상절차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이 대폭 간략화되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면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විත්තිකරු වේදනාවලට පාපෙව්වනය කළ නිසා විත්තිකරු සාරාග නඩු විභාගය යටතේ තැබීමට අධිකරණය තීරණය කළේය. සාරාග නඩු විභාගය යටතේ, සාක්ෂි විභාග කිරීමේ ක්‍රියාවලිය සරල කර ඇති අතර, සාක්ෂි විභාගයේ ප්‍රතිඵල සම්බන්ධයෙන් අධිකරණය විත්තිකරුගේ මතය විමසන්නේ නැත.

라. 변론의 속행, 재개, 분리와 병합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변론의 속행이라 하고,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병합이란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하고, 변론의 분리란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여러 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합니다. 다음 기일은 ○월 ○일 ○시입니다.
ඊළඟ නඩු විභාගයේදී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සාක්ෂිකරුවන්ගේ විභාගය දිගටම කරගෙන යනු ඇත. ඊළඟ විභාග දිනය ○○: ○○ හිදි ○○ ○○ වේ.
- ○년 ○월 ○일에 종결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합니다.
මෙම නඩුව සඳහා වන○○ හිදි ○○ වැනිද. ○○දින අවසන් මු අධිකාවනය අධිකරණය දැන් නැවත ආරම්භ කරනු ඇත.
- 피고인 ○○○에 대하여 변론을 분리합니다. / 피고인 ○○○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취소합니다.
විත්තිකරුගේ අධිකාවනය○○○ වෙන් කරන ලෙස අධිකරණය මෙයින් නියෝග කරයි.
- ○○고단○○호 사건을 본 사건에 병합합니다.
ලසාවිය මෙම නඩුව සමඟ නඩු අංක ○○ ගෝ-දන් ○○ ඒකාබද්ධ කරයි.

마.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간신이란 담당재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공판정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취지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공판개정 후 판사가 바뀌었으므로 그 동안 진행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나비 위하거여 야르미한 키리멘ен් 페쎄 티니සුරුවරයා ප්‍රතිස්ථාපනය කර කර ඇති හෙයින්, අධිකරණය මෙතාක් නඩු විහාගය දැන් අලුත් කරනු ඇත.
 -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측 모두진술을 마친 후)
 -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면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인 제시, 낭독 또는 내용 고지, 열람이 아니라 갱신 전의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අලුත් නඩු විහාගය යටතේ අධිකරණය දැන් සාක්ෂි විහාගය ආරම්භ කරනු ඇත.
 පැමිණිල්ලේ, වින්තිකරුගේ, වින්තියේ නීතිඥවරයාගේ (හේ උනන්දුවක් දක්වන පාර්ශ්වයන්ගේ), කැමැත්ත ඇත්ත් නඩුව විහාගයේ වාර්තාවේදී, සාක්ෂි ඉදිරිපත් කිරීම සහ කියවීම හේ සාක්ෂි දැනුම දීම සහ බැලීම අනුලත් සූපුරුදු ක්‍රියා පටිපාටින් අනුගමනය කිරීම වෙනුවට වරතමාන අධිකාවනයට පෙර සිදු කරන ලද එක් එක් සාක්ෂි විහාගයේ ප්‍රතිච්ඡල සඳහා වැදගත් කාරණයේ සාරාගය දැනුම දීම ඔස්සේ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සාක්ෂි විහාග කරනු ඇත. ඔබ එකහද?
 -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උනන්දුවක් දක්වන පියලු පාර්ශ්වයන් ඔවුන්ගේ කැමැත්ත ලබා දුන් බැවින්, සාක්ෂි විහාගය සුදුසු පරිදි ඉදිරියට යනු ඇත.
 - (공판조서에 의하여 갱신 전의 각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요지를 고지)
 -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종전의 변론결과와 다른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පෙර අධිකාවනා යටතේ එවික අධිකාවනාවල ප්‍රතිච්ඡල සමහ යම් විෂමතාවයක් තිබේ නම් හේ ඔබට යම් විරෝධයක් ඇත්තාම් කරුණාකර සඳහන් කරන්න.
 - 이상으로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දැන්, එමත් කරන ලද අධිකරණ කියමාරු යටතේ සාක්ෂි විහාගය ජවසන් වේ.

6. 소송관계인의 최종 의견 진술과 변론종결

가.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신문 후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검사의 의견 진술 중 어떤 형을 어느 정도 선고하여 달라고 구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구형’이라고 한다. 외국인인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을 판결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통역 인은 검사의 이러한 구형이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 검찰 측, 최종 의견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3당으로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제3당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검사) 피고인을 징역 ○년 (또는 벌금 ○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을 징역 ○년 (또는 벌금 ○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을 징역 ○년 (또는 벌금 ○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을 징역 ○년 (또는 벌금 ○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දැන්, විත්තියේ නීතිඥවරයාට අවසාන තරකය ඉදිරිපත් කළ හැකිය.
 - (변호인의 최종 변론)
 - 피고인은 재판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විත්තිකරුට ඇවානා වශයෙන් ඩිනාම ප්‍රහසක් විනිසුරු මධ්‍යෝග ප්‍රකාශ කළ හැකිය.

다. 변로종결

-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년 ○월 ○일 ○시입니다.
 ණන්, මෙම නවුව සඳහා වන අධියච්‍නා සහ තරක අවසන් බව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පකාශ කරනු ලබයි.
 ○වුනිදා ○ හිදී විනිශ්චය ප්‍රකාශ කරනු ඇත .

7. 판결선고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를 마치게 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고한다.

판결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主文)’과 그 주문에 대한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판장에 따라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낭독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법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하기도 한다.

가. 유죄판결의 주문

(1) 사형, 무기형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무기형은 피고인을 사회와 평생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
 ·
-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
 ·

(2) 유기형

유기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교도소 내에 수감하는 형벌로서,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노동을 하여야 하는 반면, 금고형은 반드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각각의 범죄별로 따로 형벌을 여러 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그러나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중간에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행한 범죄와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가 분리되어 각각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이렇게 되면 판결의 주문에서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 피고인을 징역(또는 금고) 1년에 처한다.

 ·
 ·
 ·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
 ·

-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
 ·

(3) 부정기형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그 기간 내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형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
 ·
 ·

(4) 벌금형, 구류형 및 과료형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50,000원 이상의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이고, 구류형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형벌이며, 과료형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
 ·
 ·

- 피고인을 구류 5일(또는 과료 10,000원)에 처한다.

 ·
 ·
 ·

(5)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는 피고인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을 노역장(교도소 내)에 유치하여 노동하게 함으로써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형 또는 과료형과 동시에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기간 산정을 위한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액, 법정형, 유치기간(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1일 환산금액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다 보면 하루에 미달하는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를 1일로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වින්තිකරුට වසරක වැඩ සමහ සිර දුවුවමක් නියම කරනු ලැබේ.
කෙසේ වෙතත්, එම දුවුවම ක්‍රියාත්මක කිරීම මෙම තීන්දුව අවසාන සහ තීරණාත්මක වූ දින සිට වසර දෙකකට අන්තිව්‍යනු ලැබේ.

(6) 병과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경우나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죄에 부과하여야 할 형이 일부는 징역형이고, 일부는 벌금형인 경우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වින්තිකරුට වසරක වැඩ සමහ සිර දුවුවමක් සහ කොරියානු වොන් 1,500,000 ක ද්‍රියක් නියම කරනු ලැබේ.

(7)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해졌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집행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어떤 피고인들은 주문의 앞부분만 듣고 자기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자주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역인은 집행유예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වින්තිකරුට වසරක වැඩ සමහ සිර දුවුවමක් නියම කරනු ලැබේ.
කෙසේ වෙතත්, එම දුවුවම ක්‍රියාත්මක කිරීම මෙම තීන්දුව අවසාන සහ තීරණාත්මක වූ දින සිට වසර දෙකකට අන්තිව්‍යනු ලැබේ.

(8)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을 정하기는 하지만 형 자체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형 자체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실무에서도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판결서 주문에는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며, 판결 이유에만 기재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වින්තිකරුට දුවුවම ප්‍රකාශ කිරීම අන්තිව්‍යනා ඇත.

(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받아 판결확정 이후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재범의 방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적어도 1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은 피고인 역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¹적²한³한⁴한⁵한⁶한⁷한⁸한⁹한¹⁰한¹¹한¹²한¹³한¹⁴한¹⁵한¹⁶한¹⁷한¹⁸한¹⁹한²⁰한²¹한²²한²³한²⁴한²⁵한²⁶한²⁷한²⁸한²⁹한³⁰한³¹한³²한³³한³⁴한³⁵한³⁶한³⁷한³⁸한³⁹한⁴⁰한⁴¹한⁴²한⁴³한⁴⁴한⁴⁵한⁴⁶한⁴⁷한⁴⁸한⁴⁹한⁵⁰한⁵¹한⁵²한⁵³한⁵⁴한⁵⁵한⁵⁶한⁵⁷한⁵⁸한⁵⁹한⁶⁰한⁶¹한⁶²한⁶³한⁶⁴한⁶⁵한⁶⁶한⁶⁷한⁶⁸한⁶⁹한⁷⁰한⁷¹한⁷²한⁷³한⁷⁴한⁷⁵한⁷⁶한⁷⁷한⁷⁸한⁷⁹한⁸⁰한⁸¹한⁸²한⁸³한⁸⁴한⁸⁵한⁸⁶한⁸⁷한⁸⁸한⁸⁹한⁹⁰한⁹¹한⁹²한⁹³한⁹⁴한⁹⁵한⁹⁶한⁹⁷한⁹⁸한⁹⁹한¹⁰⁰한¹⁰¹한¹⁰²한¹⁰³한¹⁰⁴한¹⁰⁵한¹⁰⁶한¹⁰⁷한¹⁰⁸한¹⁰⁹한¹¹⁰한¹¹¹한¹¹²한¹¹³한¹¹⁴한¹¹⁵한¹¹⁶한¹¹⁷한¹¹⁸한¹¹⁹한¹²⁰한¹²¹한¹²²한¹²³한¹²⁴한¹²⁵한¹²⁶한¹²⁷한¹²⁸한¹²⁹한¹³⁰한¹³¹한¹³²한¹³³한¹³⁴한¹³⁵한¹³⁶한¹³⁷한¹³⁸한¹³⁹한¹⁴⁰한¹⁴¹한¹⁴²한¹⁴³한¹⁴⁴한¹⁴⁵한¹⁴⁶한¹⁴⁷한¹⁴⁸한¹⁴⁹한¹⁵⁰한¹⁵¹한¹⁵²한¹⁵³한¹⁵⁴한¹⁵⁵한¹⁵⁶한¹⁵⁷한¹⁵⁸한¹⁵⁹한¹⁶⁰한¹⁶¹한¹⁶²한¹⁶³한¹⁶⁴한¹⁶⁵한¹⁶⁶한¹⁶⁷한¹⁶⁸한¹⁶⁹한¹⁷⁰한¹⁷¹한¹⁷²한¹⁷³한¹⁷⁴한¹⁷⁵한¹⁷⁶한¹⁷⁷한¹⁷⁸한¹⁷⁹한¹⁸⁰한¹⁸¹한¹⁸²한¹⁸³한¹⁸⁴한¹⁸⁵한¹⁸⁶한¹⁸⁷한¹⁸⁸한¹⁸⁹한¹⁹⁰한¹⁹¹한¹⁹²한¹⁹³한¹⁹⁴한¹⁹⁵한¹⁹⁶한¹⁹⁷한¹⁹⁸한¹⁹⁹한²⁰⁰한²⁰¹한²⁰²한²⁰³한²⁰⁴한²⁰⁵한²⁰⁶한²⁰⁷한²⁰⁸한²⁰⁹한²¹⁰한²¹¹한²¹²한²¹³한²¹⁴한²¹⁵한²¹⁶한²¹⁷한²¹⁸한²¹⁹한²²⁰한²²¹한²²²한²²³한²²⁴한²²⁵한²²⁶한²²⁷한²²⁸한²²⁹한²³⁰한²³¹한²³²한²³³한²³⁴한²³⁵한²³⁶한²³⁷한²³⁸한²³⁹한²⁴⁰한²⁴¹한²⁴²한²⁴³한²⁴⁴한²⁴⁵한²⁴⁶한²⁴⁷한²⁴⁸한²⁴⁹한²⁵⁰한²⁵¹한²⁵²한²⁵³한²⁵⁴한²⁵⁵한²⁵⁶한²⁵⁷한²⁵⁸한²⁵⁹한²⁶⁰한²⁶¹한²⁶²한²⁶³한²⁶⁴한²⁶⁵한²⁶⁶한²⁶⁷한²⁶⁸한²⁶⁹한²⁷⁰한²⁷¹한²⁷²한²⁷³한²⁷⁴한²⁷⁵한²⁷⁶한²⁷⁷한²⁷⁸한²⁷⁹한²⁸⁰한²⁸¹한²⁸²한²⁸³한²⁸⁴한²⁸⁵한²⁸⁶한²⁸⁷한²⁸⁸한²⁸⁹한²⁹⁰한²⁹¹한²⁹²한²⁹³한²⁹⁴한²⁹⁵한²⁹⁶한²⁹⁷한²⁹⁸한²⁹⁹한³⁰⁰한³⁰¹한³⁰²한³⁰³한³⁰⁴한³⁰⁵한³⁰⁶한³⁰⁷한³⁰⁸한³⁰⁹한³¹⁰한³¹¹한³¹²한³¹³한³¹⁴한³¹⁵한³¹⁶한³¹⁷한³¹⁸한³¹⁹한³²⁰한³²¹한³²²한³²³한³²⁴한³²⁵한³²⁶한³²⁷한³²⁸한³²⁹한³³⁰한³³¹한³³²한³³³한³³⁴한³³⁵한³³⁶한³³⁷한³³⁸한³³⁹한³⁴⁰한³⁴¹한³⁴²한³⁴³한³⁴⁴한³⁴⁵한³⁴⁶한³⁴⁷한³⁴⁸한³⁴⁹한³⁵⁰한³⁵¹한³⁵²한³⁵³한³⁵⁴한³⁵⁵한³⁵⁶한³⁵⁷한³⁵⁸한³⁵⁹한³⁶⁰한³⁶¹한³⁶²한³⁶³한³⁶⁴한³⁶⁵한³⁶⁶한³⁶⁷한³⁶⁸한³⁶⁹한³⁷⁰한³⁷¹한³⁷²한³⁷³한³⁷⁴한³⁷⁵한³⁷⁶한³⁷⁷한³⁷⁸한³⁷⁹한³⁸⁰한³⁸¹한³⁸²한³⁸³한³⁸⁴한³⁸⁵한³⁸⁶한³⁸⁷한³⁸⁸한³⁸⁹한³⁹⁰한³⁹¹한³⁹²한³⁹³한³⁹⁴한³⁹⁵한³⁹⁶한³⁹⁷한³⁹⁸한³⁹⁹한⁴⁰⁰한⁴⁰¹한⁴⁰²한⁴⁰³한⁴⁰⁴한⁴⁰⁵한⁴⁰⁶한⁴⁰⁷한⁴⁰⁸한⁴⁰⁹한⁴¹⁰한⁴¹¹한⁴¹²한⁴¹³한⁴¹⁴한⁴¹⁵한⁴¹⁶한⁴¹⁷한⁴¹⁸한⁴¹⁹한⁴²⁰한⁴²¹한⁴²²한⁴²³한⁴²⁴한⁴²⁵한⁴²⁶한⁴²⁷한⁴²⁸한⁴²⁹한⁴³⁰한⁴³¹한⁴³²한⁴³³한⁴³⁴한⁴³⁵한⁴³⁶한⁴³⁷한⁴³⁸한⁴³⁹한⁴⁴⁰한⁴⁴¹한⁴⁴²한⁴⁴³한⁴⁴⁴한⁴⁴⁵한⁴⁴⁶한⁴⁴⁷한⁴⁴⁸한⁴⁴⁹한⁴⁵⁰한⁴⁵¹한⁴⁵²한⁴⁵³한⁴⁵⁴한⁴⁵⁵한⁴⁵⁶한⁴⁵⁷한⁴⁵⁸한⁴⁵⁹한⁴⁶⁰한⁴⁶¹한⁴⁶²한⁴⁶³한⁴⁶⁴한⁴⁶⁵한⁴⁶⁶한⁴⁶⁷한⁴⁶⁸한⁴⁶⁹한⁴⁷⁰한⁴⁷¹한⁴⁷²한⁴⁷³한⁴⁷⁴한⁴⁷⁵한⁴⁷⁶한⁴⁷⁷한⁴⁷⁸한⁴⁷⁹한⁴⁸⁰한⁴⁸¹한⁴⁸²한⁴⁸³한⁴⁸⁴한⁴⁸⁵한⁴⁸⁶한⁴⁸⁷한⁴⁸⁸한⁴⁸⁹한⁴⁹⁰한⁴⁹¹한⁴⁹²한⁴⁹³한⁴⁹⁴한⁴⁹⁵한⁴⁹⁶한⁴⁹⁷한⁴⁹⁸한⁴⁹⁹한⁵⁰⁰한⁵⁰¹한⁵⁰²한⁵⁰³한⁵⁰⁴한⁵⁰⁵한⁵⁰⁶한⁵⁰⁷한⁵⁰⁸한⁵⁰⁹한⁵¹⁰한⁵¹¹한⁵¹²한⁵¹³한⁵¹⁴한⁵¹⁵한⁵¹⁶한⁵¹⁷한⁵¹⁸한⁵¹⁹한⁵²⁰한⁵²¹한⁵²²한⁵²³한⁵²⁴한⁵²⁵한⁵²⁶한⁵²⁷한⁵²⁸한⁵²⁹한⁵³⁰한⁵³¹한⁵³²한⁵³³한⁵³⁴한⁵³⁵한⁵³⁶한⁵³⁷한⁵³⁸한⁵³⁹한⁵⁴⁰한⁵⁴¹한⁵⁴²한⁵⁴³한⁵⁴⁴한⁵⁴⁵한⁵⁴⁶한⁵⁴⁷한⁵⁴⁸한⁵⁴⁹한⁵⁵⁰한⁵⁵¹한⁵⁵²한⁵⁵³한⁵⁵⁴한⁵⁵⁵한⁵⁵⁶한⁵⁵⁷한⁵⁵⁸한⁵⁵⁹한⁵⁶⁰한⁵⁶¹한⁵⁶²한⁵⁶³한⁵⁶⁴한⁵⁶⁵한⁵⁶⁶한⁵⁶⁷한⁵⁶⁸한⁵⁶⁹한⁵⁷⁰한⁵⁷¹한⁵⁷²한⁵⁷³한⁵⁷⁴한⁵⁷⁵한⁵⁷⁶한⁵⁷⁷한⁵⁷⁸한⁵⁷⁹한⁵⁸⁰한⁵⁸¹한⁵⁸²한⁵⁸³한⁵⁸⁴한⁵⁸⁵한⁵⁸⁶한⁵⁸⁷한⁵⁸⁸한⁵⁸⁹한⁵⁹⁰한⁵⁹¹한⁵⁹²한⁵⁹³한⁵⁹⁴한⁵⁹⁵한⁵⁹⁶한⁵⁹⁷한⁵⁹⁸한⁵⁹⁹한⁶⁰⁰한⁶⁰¹한⁶⁰²한⁶⁰³한⁶⁰⁴한⁶⁰⁵한⁶⁰⁶한⁶⁰⁷한⁶⁰⁸한⁶⁰⁹한⁶¹⁰한⁶¹¹한⁶¹²한⁶¹³한⁶¹⁴한⁶¹⁵한⁶¹⁶한⁶¹⁷한⁶¹⁸한⁶¹⁹한⁶²⁰한⁶²¹한⁶²²한⁶²³한⁶²⁴한⁶²⁵한⁶²⁶한⁶²⁷한⁶²⁸한⁶²⁹한⁶³⁰한⁶³¹한⁶³²한⁶³³한⁶³⁴한⁶³⁵한⁶³⁶한⁶³⁷한⁶³⁸한⁶³⁹한⁶⁴⁰한⁶⁴¹한⁶⁴²한⁶⁴³한⁶⁴⁴한⁶⁴⁵한⁶⁴⁶한⁶⁴⁷한⁶⁴⁸한⁶⁴⁹한⁶⁵⁰한⁶⁵¹한⁶⁵²한⁶⁵³한⁶⁵⁴한⁶⁵⁵한⁶⁵⁶한⁶⁵⁷한⁶⁵⁸한⁶⁵⁹한⁶⁶⁰한⁶⁶¹한⁶⁶²한⁶⁶³한⁶⁶⁴한⁶⁶⁵한⁶⁶⁶한⁶⁶⁷한⁶⁶⁸한⁶⁶⁹한⁶⁷⁰한⁶⁷¹한⁶⁷²한⁶⁷³한⁶⁷⁴한⁶⁷⁵한⁶⁷⁶한⁶⁷⁷한⁶⁷⁸한⁶⁷⁹한⁶⁸⁰한⁶⁸¹한⁶⁸²한⁶⁸³한⁶⁸⁴한⁶⁸⁵한⁶⁸⁶한⁶⁸⁷한⁶⁸⁸한⁶⁸⁹한⁶⁹⁰한⁶⁹¹한⁶⁹²한⁶⁹³한⁶⁹⁴한⁶⁹⁵한⁶⁹⁶한⁶⁹⁷한⁶⁹⁸한⁶⁹⁹한⁷⁰⁰한⁷⁰¹한⁷⁰²한⁷⁰³한⁷⁰⁴한⁷⁰⁵한⁷⁰⁶한⁷⁰⁷한⁷⁰⁸한⁷⁰⁹한⁷¹⁰한⁷¹¹한⁷¹²한⁷¹³한⁷¹⁴한⁷¹⁵한⁷¹⁶한⁷¹⁷한⁷¹⁸한⁷¹⁹한⁷²⁰한⁷²¹한⁷²²한⁷²³한⁷²⁴한⁷²⁵한⁷²⁶한⁷²⁷한⁷²⁸한⁷²⁹한⁷³⁰한⁷³¹한⁷³²한⁷³³한⁷³⁴한⁷³⁵한⁷³⁶한⁷³⁷한⁷³⁸한⁷³⁹한⁷⁴⁰한⁷⁴¹한⁷⁴²한⁷⁴³한⁷⁴⁴한⁷⁴⁵한⁷⁴⁶한⁷⁴⁷한⁷⁴⁸한⁷⁴⁹한⁷⁵⁰한⁷⁵¹한⁷⁵²한⁷⁵³한⁷⁵⁴한⁷⁵⁵한⁷⁵⁶한⁷⁵⁷한⁷⁵⁸한⁷⁵⁹한⁷⁶⁰한⁷⁶¹한⁷⁶²한⁷⁶³한⁷⁶⁴한⁷⁶⁵한⁷⁶⁶한⁷⁶⁷한⁷⁶⁸한⁷⁶⁹한⁷⁷⁰한⁷⁷¹한⁷⁷²한⁷⁷³한⁷⁷⁴한⁷⁷⁵한⁷⁷⁶한⁷⁷⁷한⁷⁷⁸한⁷⁷⁹한⁷⁸⁰한⁷⁸¹한⁷⁸²한⁷⁸³한⁷⁸⁴한⁷⁸⁵한⁷⁸⁶한⁷⁸⁷한⁷⁸⁸한⁷⁸⁹한⁷⁹⁰한⁷⁹¹한⁷⁹²한⁷⁹³한⁷⁹⁴한⁷⁹⁵한⁷⁹⁶한⁷⁹⁷한⁷⁹⁸한⁷⁹⁹한⁸⁰⁰한⁸⁰¹한⁸⁰²한⁸⁰³한⁸⁰⁴한⁸⁰⁵한⁸⁰⁶한⁸⁰⁷한<

- 위 벌금(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한다.
 • ឧបន ធម្មន៍ ឯធម មួល (ហេង អកនុ គិរិមិ និយោះយ) នាមុខតារ ពេលវេលា លេខ ិន្ទីការណ មែនដឹង និយោះយ កៅរ់.

나. 유죄판결 이외의 주문

(1)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결의 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일간신문 광고판에 게재 및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은 무죄.
 අධිකරණය වින්තිකරු වැරදිකරු නොවන බව සෞය ගනී.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මෙම නඩුවේ ඇති එව්දනා අනුරින්, වින්තිකරු විචාචට වැරදිකරු නොවන බව අධිකරණය සෞය ගනී.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අධිකරණය දැන් වින්තිකරුට දැන් නීතිවේ සාරාංශය ප්‍රකාශ කරනු ඇත.

(2) 면소판결

면소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이후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면소.
 වින්තිකරු මෙයින් නිඳුස් කරනු ලැබේ.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면소.
 මෙම තහවුරු ආති වෝද්‍යා වලින් වින්තිකරු වීවා වෝද්‍යාවන් තිඟස් වේ

(3)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소송을 위한 절차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선고하는 재판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당시에 고소가 없었다거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이중기소가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검사가 공소 자체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본래 납득될수 있는 형법상의 사고나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본래 납득될수 있는 형법상의 사고나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본래 납득될수 있는 형법상의 사고나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 판결선고와 관련한 각종 고지

(1) 항소기간, 항소법원 및 항소장 제출법원의 고지

(2) 판결등본 송달신청의 고지

- 불구속 피고인(집행유예 등 선고로 석방되는 구속 피고인 포함)에게는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විත්තිකරු ලිඛිත නීත්‍යවක් ඉල්ලා සිටියහාන් මිස රැඳුම හාරයේ නොසිටින විත්තිකරුවෙකුට අධිකරණය ලිඛිත නීත්‍යවක් යවන්නේ නැතු.

අද පිට දීම 7 ක් ඇතුළත වින්තිකරුට අධිකරණයට සේවා සඳහා ඉල්ලීමක් ගොනු කිරීමෙන් ලිඛිත තින්ස්ට්‍රුක් ලබා ගත හැකිය.

(3)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실효, 취소사유의 고지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 예) 암수범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경우 준수사항 등 고지

-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기간(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기간) 동안 지금 교부하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최소되어 유예한 혐의를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අන්තිව්‍ය දූෂ්‍යවම සමහ වින්තිකරු පරිවාස (ප්‍රජා සේවය, පන්තිවලට පැමිණීම) නියෝගයකට යටත් වේ. මෙම තීන්දුව අවසාන සහ තීරණන්මක වූ දින සිට දින 10 ක් ඇතුළත, වින්තිකරු වින්තිකරුගේ වාසස්ථානය පිළිබඳ අධිකරණ බලය ඇති පරිවාස කාර්යාලයට වාර්තා කළ යුතු අතර, පරිවාස නිලධාරී උපදෙස් පරිදි පරිවාස නියෝගය (ප්‍රජා සේවය, පන්තිවලට පැමිණීම) කියාන්මක කළ යනය.

ରେ ଅମନର, ପରିବାସ କ୍ଷାଳୟ ତୁଲ ଅଦିକରଣ୍ୟ ରିପିନ୍‌ ବିବାହ ଲାଭ ଦେଖ ଉପଦେସିଲାଗା (ପୁରୁ ଜେବେ, ପନ୍ଥନିତିଲାଗା ଆଶିତ୍ତିଲା) ବିନ୍ଦୁନିକର୍ଣ୍ଣ କୀକର୍ଣ୍ଣ ପ୍ରଭ୍ୟା ବିନ୍ଦୁନିକର୍ଣ୍ଣ ଲାଭ ଦେଖିଲାଗା ଏହା ନିଯେଗାପଠ ଅନୁକୂଳାବି କବିଫ୍ରଣ୍ଡ କରିମତ ଅଭେଦହୋଇଲା ବ୍ରିଵିହାନୀ, ଅନ୍ତର୍ଭେଦିଲା ଦୃଵନ୍ତର ଦେଖାଏ ଅନ୍ତର୍ଭେଦିଲା ଦ୍ୱିଵାର ନୀତିକ ଚର୍ଚାପତି ବିନ୍ଦୁ ଆହୁ.

(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වින්තිකරු වැදගිරු වී තින්වූ අවසාන සහ තීරණන්මක නම්, ඔහු (අය) ලිංගික අපරාධවල දිව්වම යනාදිය සම්බන්ධ විශේෂ අවස්ථා පිළිබඳ පනතට අනුකූලව ඔහුගේ (අයගේ) පොදුගැලික තොරතුරු ලියපදිංචි කළ යුතුය. තින්වූ අවසාන හා තීරණන්මක වූ දහ සිට දහ 30 ක් ඇතුළත, වින්තිකරු ඔහුගේ (අයගේ) පොදුගැලික තොරතුරු වාසයස්ථානය පිළිබඳ අධිකරණ බලය අති පෙළිස් ස්ථානයේ ප්‍රධානීය වෙත ඉදිරිපත් කළ යුතුය. (රිමාන්ඩ් භාරයේ හෝ බන්ධනාගාරයේ සිටින වින්තිකරුවෙක් නම්, එහි ප්‍රධානීය වෙත ඉදිරිපත් කළ යුතු වේ.)

(6)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소송관계인은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අපරාධ නඩු විධාන ප්‍රජාත්වය අනුකූලව, විනාම පුද්ගලයෙකුට අවසාන තීන්දුවක් ලබ දී ඇති නඩුවක ලිවිත තීන්දුව සහ වෙනත් තොරතුරු පරික්ෂා කිරීමට හේ පිටපත් කිරීමට හැකිය. එවැනි හෙළුදුව් කිරීමක් පුද්ගලයාගේ කිරීතිනාමයට, පෞද්ගලිකත්වයට හේ පෞද්ගලික ජීවිතයේ හේ ගෙරිරයේ ආරක්ෂාවට භාජියක් කරයි නම් හේ එවැනි පුද්ගලයෙකුගේ ජීවිතයේ සාමාජික භාජි කරයි නම් හේ එම පුද්ගලයාගේ වෙළඳ රහස් සැලකිය යුතු ලෙස උල්ලාසනය කිරීමට ඉඩ තේවී නම්, උන්දුවක් දැක්වන පාර්ශවයකට එවැනි පරික්ෂණයක් හේ පිටපත් කිරීමක් තහනම් කරන ලෙස ඉල්ලා සිටිය හැකිය.

라. 피고인의 법정구속 시 청문절차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망(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වින්තිකරුට දෙවුම් නියම කළේ ඉහත යදාන් කළ අපරාධයේ අංග කරගුණ පදනම් කරගෙනය. ඔහු (අය) පැන යාමට (හෝ සාක්ෂි විනාශ කිරීමට) ඉඩ ඇති හෙයින් අධිකරණය වින්තිකරු රඳවා තබා ගනී. මෙම තීරණය ගැන වින්තිකරුට යමක් කිමත් තිබේද?
 - 피고인에게 도망(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යදෙම් හාරයේ සිටින වින්තිකරු පැන යාමට (හෝ සාක්ෂි විනාශ කිරීමට) ඉඩ ඇති නිසා මෙයින් අධිකරණය රඳවා ගැනීමේ වරෙන්තුවක් නිකුත් කරයි. වින්තිකරුට තීනිඛයෙකුගේ සහය ලබා ගැනීමට ආයතිතයක් ඇත. බෙවා රඳවාගෙන සිටීම පිළිබඳව දැනුම ඉමත ඔබ කුමති අයෙක් සිටීද?

제4절 ● 항소심 절차

1. 항소심 절차 개요

제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검사나 피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후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결 구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형 집행일에 산입된다. 한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심 재판을 합의부에서 하였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단독판사가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항소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장은 반드시 제1심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제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이를 송부 받은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게 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사본을 보내주는데 항소이유서를 받은 피고인은 그 때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를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1심 공판절차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2. 항소심 공판절차

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피고인 출석으로 개정한 첫 기일에는 제1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한다.

나.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과 상대방의 답변 진술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 각 진술을 기초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의 방향을 정한다.

다. 증거조사

항소심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증거조사절차는 제1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피고인신문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마. 소송관계인의 최종 의견 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순서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때에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3. 항소심 판결의 주문

가. 항소기각판결

항소심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항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는 티크루에 거에 앤디와인의 암비크란을 몰리노는 키ഴ류를 캐리.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암비크란을 퀘리노는 앤디와인의 키ഴ류를 캐리.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는 티크루에 거에 앤디와인의 암비크란을 몰리노는 키ழ류를 캐리.

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은 항소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한다. 항소한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 피고인의 항소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አዲකርණය ሥለለ አዲකරණයේ තීන්දුව නැවත සලකා බැඳීම යදා මොමු කරයි
විත්තිකරුට වැඩ සහිත වසරක සිර දුටුවමක් නියම වේ.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පහළ උසාවයේ තීන්දුවෙන් විත්තිකරුට අදාළ තීන්දුවේ කොටස ○○○ අධිතිරණය කර ඇත.

විත්තිකරුට වැඩ සහිත වසරක සිර දුටුවමක් නියම වේ. තංපා: ○○○ණ් ප්‍රාග්ධන ප්‍රාග්ධන විත්තිකරුගේ △△△ අභියාචනය අධිකරණය නිශ්ච්ඡහ කර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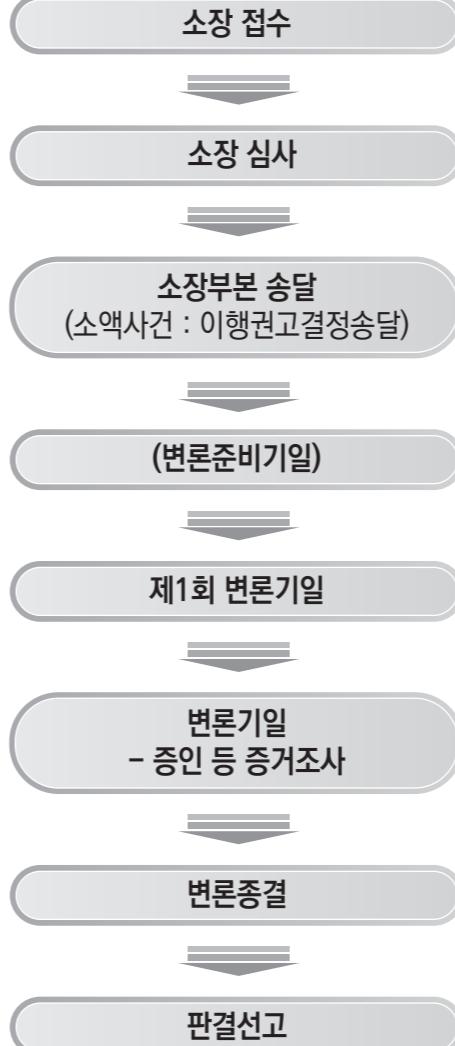
제3편

민사소송절차



제3편 민사소송절차

제1절 ●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조정회부
→
←
조정불성립

조정(수소법원, 조정위원회)

화해권고결정

-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 소송절차의 진행

1. 소장 제출

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송달영수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처음에 기재한 주소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변경 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한 후 유효한 송달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장에 첨부할 서류는 ①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② 법정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등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외에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예: 상대방이 2명인 경우 원본 1통, 부본 2통).

2. 소송대리인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하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한다(변호사대리의 원칙). 변호사대리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소액사건(소송물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소송물의 값이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후 사건이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병합되는 등으로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소송물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3. 소장 부분의 송달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하고, 보완이 필요 없거나 완료되면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사무소·영업소·근무장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게 된다.

4. 답변서의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피고가 무변론판결의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법을 기재한 후, 그 증거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

5. 준비서면의 제출

한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면서 기한을 정하여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다.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6. 증거 제출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1) 서증

소송에서 증거서류를 ‘서증’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등으로 부호를 붙인다.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각 증거서류의 사본 1통과 상대방의 수만큼의 사본을 더하여(예: 상대방이 2명인 경우 사본 3통)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고,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증복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증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관련 예규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다.

(2) 증인신청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에 4부를 더하여 제출한다.

(3) 검증·감정·사실조회·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7.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의 진행

서면공방절차를 마치면 법원은 변론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기일이 지정되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에서 당사자는 주장을 정리하여 진술하고, 법원은 서증을 조사하거나 다른 증거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면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입증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때만 허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마치도록 한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등의 출석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법률상 주요 내용, 쟁점, 증거방법 등의 요지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하고,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 정리서면’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다.

8. 조정절차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다.

9. 화해권고결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된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10. 판결선고, 상소와 판결의 확정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한다.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

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판결이 확정된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다. 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한다.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1. 소액사건의 경우

(1)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과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 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그 등본을 송달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2)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따라서 당사자는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2. 기타 제도

(1) 소송구조 제도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국가가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결정에서 정

한 항목에 대하여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한다.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재 다수 법원의 종합민원실의 소송구조 신청창구에서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소송 제도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송달되고, 그와 같은 전자문서가 이용되는 재판절차이다.

당사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할 소송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록을 열람·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 재판장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예시)

제1회 변론기일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쭈버 런던산호(영국인, 쌍둥이). 헤드 ○○ 디렉터의 아들인 재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바에 따르면, 영국은 영국인에게만 영국국적을 부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합헌입니다. 영국은 영국인에게만 영국국적을 부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합헌입니다.
 - 2015가단○○○○호 사건 원고 ○○○씨, 피고 ○○○씨 나오셨나요? 원(피)고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나 오셨나요?

[변론준비절차 결과의 진술]

〈당사자 주도형〉

-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를 원고와 피고가 차례로 요약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දැන්, ප්‍රමිතිලිකරු සහ විත්තිකරු පූර්ව නඩු සමුළුවේ සාක්ෂි විභාගයෙන් ලබාගන් කරුණු සහ ප්‍රතිඵල සාරාංශ කරනු ඇත.

නඩුව හාර විනිසුරුවරය වෙනස් කර ඇති නිසු අධිකරණය මෙයින් නඩු කටයුතු පූල්‍ය කරයි. පෙර නඩු විභාගයේදී පැමිණිලිකරු 〇〇 යැයි තර්ක කළ අතර විත්තිකරු 〇〇 යැයි තර්ක කළේය. ඒ අනුව මෙම නඩුවේ ප්‍රශ්නය 〇〇 පරිදි සාරාග කොට ඇත.

- 그리고 ○○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면 원고, 피고 순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 පිළිබඳව සොය බැලු අතර සොයගන් තොරතුරුවලට අනුව ○○ බේ. ඔබට අමතර අදහසක් ඇත්තාම්,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පැමිණිලිකරුගේ උකාගය පළමුවද පසුව වින්තිකරුගේ අදහස් දැක්වීමද විමයනු ඇත.

[일반 변론기일의 진행]

- 증인은 이제 오른손을 들고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දැන්, සාක්ෂිකරු ඔහුගේ (ඇයගේ) දකුණු අත ඔසවා, ඔහු (ඇය) අන්විද ඇති දේ සත්‍යවාදීව හා නිවැරදිව සාක්ෂි දීමට දිවුරුම් දෙනු අත. සාක්ෂිකරු, එම දිවුරුම් දීමෙන් පසු, ඔහු (ඇය) තමා අන්විද නැති දෙයක් ඔහු (ඇය) අන්විදින ලදූයි සාක්ෂි දරන්නේ නම් හෝ ඔහු (ඇය) පැහැදිලිව මතක නැති දේ පැහැදිලිව මතක ඇති ලෙසට සඳහන් කළහොත් අධිකරණය නොමග යැවිමේ වරදව සාක්ෂිකරුට දුබුවම් ලැබෙනු ඇත.

(사건내용 및 쟁점 간단히 설명)

- 우선 원고 대리인이 먼저 묻고 피고 대리인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겁니다. 대리인들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පැමිණිලිකරුගේ නීතිඥවරයා පළමුව ප්‍රශ්න අසනු ඇත, දෙවනුව විනිතිකරුගේ නීතිඥවරයා එයට පසු විනිශ්චරු මධ්‍යලේලට කිසියම් ප්‍රශ්න ඇත්තාම අසනු ඇත. ඔබට ප්‍රශ්නය තේරෙන්නේ නැත්තාම, ප්‍රශ්නය නැවත අසන ලෙස නීතිඥවරයාගෙන් ඉල්ලා සිටිය හැකිය.
 - 그리고 질문을 잘 듣고 잘 생각한 후에 신중히 대답하십시오.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세요. 증언은 녹음 중이니 천천히 또박또박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ප්‍රශ්නවලට සාවධානයෙන් සවන් දෙන්න, ඉන්පසු ප්‍රශ්නය ගොඳීන් සලකා බැලීමෙන් පසුව පමණක් ඔබ පිළිතුර ලබා දෙන්න. ඔබට යමක් මතක නැති නම, ඔබට මතක නැති බව පැවසිය හැකිය. ඔබ සාක්ෂිය සටහන් වෙළින් පවතී. කරුණාකර ඔබට තොල් මයික්රෝනායට සම්පූර්ණ කර එක් එක් ව්‍යවහාර සෙමින් උව්වාරණය කර කරා කරන්න.
 -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ඔබ සූජනම් නම, අධිකරණය දැන් විභාගය ආරම්භ කරනු ඇත. පැමිණිලිකරු වෙනුවෙන් පෙනී සිටි නීතිඥවරයා දැන් සාක්ෂිකරුව පරීක්ෂා කරනු ඇත.
 - 증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멀리서 와서 증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ඔබගේ සහයෝගයට ස්නෑනියි. සාක්ෂිය සඳහා මෙම උසාවියට පැමිණීම ගැන නැවත වරක් ඔබට ස්නෑනියි. ආයුෂේෂ්වන්.
 -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고지 등)
 - 오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අධිකරණය අදට අධියාවනා අවසන් කරනු ඇත. නඩුව සම්බන්ධයෙන් යමෙකුට කිසියම් අදහසක් තිබේ?
 - 변론을 종결하고, 그 동안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결은 3주 후인 ○월 ○일 ○○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판결문은 주소지로 송달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가십시오.

අධිකරණය දැන් අධියවනා අවස්ථා කර නඩුව විතියෙන් කිරීම සඳහා මෙතෙක්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වාර්තා සමාලෝචනය කරනු ඇත. තීන්දුව දැන් සිට සති තුනකින්, 〇〇:〇〇 දින 〇〇, 〇〇 නිශ්චි මෙම උස්‍යවියේදී ප්‍රකාශයට පත් කෙරේ. තීන්දු ප්‍රකාශය සඳහා ඔබ පෙනී සිටීම අවශ්‍ය තොටත අතර ලිඛිත තීන්දුව ඔබගේ වර්තමාන වාසස්ථානය පිහිටි රට්ටී ලබා දෙනු ඇත. ඔබට සෑනුනියි ආයුත්‍යබෝධන්.

[판결선고기일]

- 2015가단○○○○○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씨, 피고○○○씨 출석하였나요?
 නඩු අංක 2015 ගා-දැන් සඳහා අධිකරණය දැන් තීන්දුව ප්‍රකාශයට පත් කරනු ඇත. පැමිණිලිකරු ○○, විත්තිකරු ○○○, ඔබ පැමිණ සිටිනවාද?

■ 민사사건의 주문례

[제1심에서의 판결]

▶ 이행청구

- 피고는 원고 ○○○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비년기금 7.5%의 1.5배로 계산되는 연 20%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1,500만 원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21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과 같은 액수이다.
21일 만기로 계산되는 연 5%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1,500만 원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21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과 같은 액수이다.
 - 피고는 원고 ○○○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m²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m²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비년기금 100㎡에 7.5%로 계산되는 750만 원은 50㎡를 철거하는 대가로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2014. 7.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비년기금 7.5%로 계산되는 월 100만원은 50㎡를 철거하는 대가로 인정된다.

4. 피고는 원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වින්තිකරු විසින් පැමිණිලිකරු 〇〇〇ට:

- අමුණු ඇති ලැයිස්තුවේ නියෙන්වන දක්වා ඇති ගොඩනගැලීලේ හිමිකාන්ත්වය පැවරීම 2014 ජූලි මස 1 වන දින විකිණීමක් ලෙස ලියාපදිංචි කිරීමේ ක්‍රියා පටිපාටිය සම්පූර්ණ කරන්න.
 - එමත්ම 2014 අගෝස්තු මස් 1 වන දින සිට 〇〇 දි දිස්ත්‍රික් උසාවියේ 〇〇 රේස්ට්‍රාර අංක 〇〇〇 ලෙස අනුළත් කර ඇති හිමිකාන්ත්වය පැවරීමේ ලියාපදිංචිය අවලාග කිරීමේ ක්‍රියා පටිපාටිය සම්පූර්ණ කරන්න.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පැමිණිලිකරුගේ ඉතිරි හිමිකම මෙයින් බැහැර කරනු ලැබේ.

6. 소송비용 중 1/2은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ନାହିଁ ବିଯଦମ ଲିଙ୍ଗ 1/2 କୁ ପ୍ରାତିଶୀଳିକର୍ତ୍ତା ଲିପିଙ୍କ ଧରନ୍ତି ଲବନ ଅତର, ତୁମରେ ମୁଦଳ ଲିଙ୍ଗକର୍ତ୍ତା ଲିପିଙ୍କ ଧରିଯାଇନ୍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ඉහත 1 වන ජේදය තාවකාලික ක්‍රියාත්මක කිරීමට යටත් විය භැකිය.

▶ 확인청구

▶ 소 각하 판결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

▶ 청구기각 판결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판결]

▶ 항소기각

- 원고(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පැමිණිලිකරු (හෝ විත්තිකරු) විසින් ගෙනු කරන ලද අභියාචනය මෙයින් නිෂ්ප්‍රහ කරනු ලැබේ.

▶ 제1심 판결 전부 취소(1)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පළමු අවස්ථාවහි තීන්දුව මෙයින් ඉවත්ව යන අතර පැමිණිලිකරුගේ හිමිකම් නිෂ්ප්‍රහ කරනු ලැබේ.

▶ 제1심 판결 전부 취소(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පළමු අවස්ථාවහි විනිශ්චය මෙයින් ඉවත් වේ.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විත්තිකරු පැමිණිලිකරුට කොරියනු වානි මිලියන 20 ක් සහ 2014 ජූලි 1 දින සිට 2015 අගෝස්තු 31 දින දක්වා වාර්ෂිකව 5% බැඳීන් උපවිත පොලිය ගෙවිය යුතු අතර, රේඛ දිනයේ සිට සම්පූර්ණ ගෙවීම කරන දින දක්වා ඒ සඳහා වසරකට 20% ක අනුපාතයකින් පොලිය ගෙවිය යුතුය.

▶ 제1심 판결 일부 취소(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පළමු අවස්ථාවේ තීන්දුවන්, පහත නියෝග කර ඇති මූලෙන් ඉක්මවා යන පැමිණිලිකරට පක්ෂව විනිශ්චය කරන ලද කොටස මෙයින් ඉවත් වේ. පුරුෂ්පාඩු වූ කොටසට අනුරුධව පැමිණිලිකරුගේ හිමිකම් වලින් කොටසක් බැහුරු කරනු ලැබේ.

විත්තිකර පැමිණිලිකරට කොරයානු වොන් මිලයන 20 ක් සහ 2014 ජූලි 1 දින සිට 2015 අගෝස්තු 31 දින දක්වා වාර්ෂිකව 5% බැහිත් උපවිත පොලිය ගෙවිය යුතු අතර, රේඛන දිනයේ සිට සම්පූර්ණ ගෙවීම කරන දින දක්වා එසේ සඳහා වසරකට 20% ක අනුපාතයකින් පොලිය ගෙවිය යුතුය.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විත්තිකරුගේ අභියාචනයේ ඉතිරි කොටස මෙයින් බැහැර කරනු ලැබේ.

▶ 제1심 판결 일부 취소(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පළමු අවස්ථාවේ තීන්දුවන්, පහත නියෝග කර ඇති මුදලට අනුරූපව විත්තිකරුට පක්ෂවල විනිශ්චය කරන දේ කොටස මෙයින් ඉවත් වේ. විත්තිකරු පැමිණිලිකරුට කොරයානු වාන් මිලයන 20 ක් සහ 2014 ජූලි 1 දින සිට 2015 අගෝස්තු 31 දින දක්වා වාර්ෂිකව 5% බැඳින් උපවිත පොලිය ගෙවිය යුතු අතර, රේඛ දිනයේ සිට සම්පූර්ණ ගෙවීම කරන දින දක්වා ඒ සඳහා වසරකට 20% ක අනුපාතයකින් පොලිය ගෙවිය යුතුය.



제4편

신청사건



제4편 신청사건

제1절 ● 보전처분 절차의 개요



제2절 ● 보전처분의 의의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생겨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보전처분 재판이란 이처럼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집행을 쉽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제3절 ● 종류

1. 가압류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 재산을 현재 상태대로 유지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갖는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다.

2. 가처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에는 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돈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 또는 인도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물(계쟁물)에 대해 앞으로 하게 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목적물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

여 다툼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은 후에는 그 판결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로 지위를 주어’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그 예로는 공사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물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있다.

제4절 ● 보전처분절차의 진행

1. 신청

(1) 관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한편,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2)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생기게 될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돈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3)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가압류를 하는 대상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예컨대 부동산가압류는 급여가압류나 유체동산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현재 상태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권리의 실현을 못하게 되거나 실현이 매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큰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나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보전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채권가압류의 경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송달영수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다. 또한 가압류신청의 경우, 청구채권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 목적물(별지 첨부)을 기재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처분 목적물 등을 기재한다. 신청원인에는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그와 같이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기재한 후 신청서에 첨부한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와 인지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가 각하된다.

(5) 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의 각각의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서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빠뜨린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재판

보전처분신청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법원이 제공하도록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

보전처분을 인용하는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담보는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대신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3. 보전처분의 집행

보전처분은 그 명령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고,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보전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절 ● 채무자의 구제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변론 또는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이의신청은 보전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기재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 등 보전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의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한 이의신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보전처분 인가결정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래의 보전처분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 다툴 수 있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보전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제소기간 경과, ② 사정변경, ③ 담보제공, ④ 특별사정 등이 있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는, 채권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가 제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는, 일단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도중에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이 재량껏 정하여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여 그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는 가처분으로 보전하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가처분 집행 때문에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결정에서와 같이 즉시항고하여 다툴 수 있다.

제5편

가사절차

제5편 가사절차

제1절 ● 가사재판의 개요

1. 가사재판의 종류

(1)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사건으로, 대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주로 실체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주장의 당부를 판단

- 가류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 나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 다류 : 약혼 해제 및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2)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비송사건으로, 정책적인 고려로 법원이 후견, 감독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사건

- 라류 :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등
- 마류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

(3) 가족관계비송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함이 원칙임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협의이혼사건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이혼 중 75%는 협의상 이혼에 의한다.

제2절 ● 협의이혼절차 안내

1. 관할

-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나 가정지원,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서울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인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인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인 경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신청

가. 공동·직접 신청

-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질상 일방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 및 그 밖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류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련기간 내에 만 19세에도 달하는 자녀는 제외)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다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신청의 취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안내 및 상담

가. 안내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등을 안내한다.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안내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 한하여는 동영상을 통한 별도의 부모교육 등을 받게 한다.
- 안내를 받으면 그날부터 숙련기간이 진행된다. 안내가 끝나면 바로 담당 직원이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안내일로부터 숙련기간 경과 후의 일자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로 지정하여 협의이혼안내서에 기재하여 줌으로써 이를 고지한다.
- 한편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상담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상담은 숙려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숙려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담당판사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숙려기간의 경과

가. 숙려기간의 의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나.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소명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판사는 사유서를 참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고 단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5.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

가. 제출의무 및 그 시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확정증명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 판사는 협의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당사자의 이혼의사와 함께 이를 확인한다.

다. 협의서에 대한 보정명령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에서 명하는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①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양육의 적합성,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을 고하여 정하도록 하되,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가급적 이를 일치시키도록 권유한다.
-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각각 다른 양육자를 정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권유한다.

② 양육비용의 부담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비 등으로, 자녀의 연령, 수,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에게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의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가급적 정기적인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와 같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히도록 한다.

-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6.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가. 확인기일의 지정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기일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의 일자로 지정된다. 당사자가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혀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기일의 실시

- 확인기일에는 신분증 등으로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유무를 확인한다.
- 담당 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를 확인한다.
- 기일에서의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부부 중 양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절차이므로 당사자 일방 만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도 취하간주된다.

다. 확인 시의 처리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 기재)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한 부부 양쪽에게 교부한다. 한편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라. 이혼의사를 불확인 하는 경우

-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진행 예시

[일괄설명]

- 지금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민법은 혼인할 때와는 달리 이혼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오늘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 시청 또는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이 도과된 경우에는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와 함께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는 기다리시다가 호명되는 당사자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

(신분증의 확인 후)

- 미성년자인 자녀로 김갑동, 김갑순이 있군요.
법원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 이을순씨를 지정하기로 하셨지요?
물론 외국인으로서 그녀가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부 김병남씨는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말일 미성년 자녀 1인당 50만원씩, 두 명 합쳐서 총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셨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부 김병남씨는 자녀들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하셨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두 분 다 이혼하시기로 합의하셨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협의이혼의 확인을 마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제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7. 이혼신고, 이혼의사의 철회

가. 이혼신고

- 이혼신고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 이혼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관할 구청장, 광역시 내 군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읍·면의 장에게 한다.

나. 이혼의사의 철회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제3절 ●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1. 이혼 소송의 제기

-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
-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사항을 정하게된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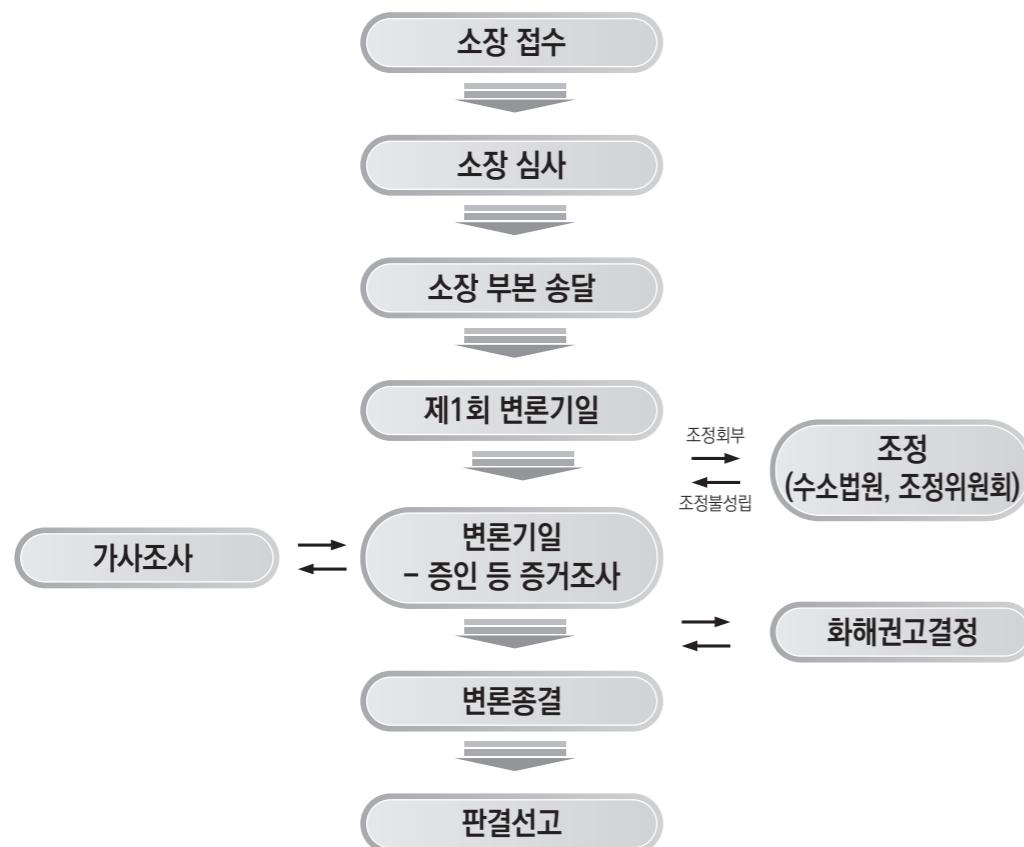
-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4.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분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사전처분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 변론

-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다.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기일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다.
-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진다.
-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라.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된다.
 -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료, 도박중독치료 등

마. 조정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
 -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다.
 -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다.

바. 화해권고결정

-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된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행방식

제1회변론기일

(당사자주도형)

- 원고 대리인, 청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ඡැමිණිලිකරුගේ නීතිඥවරයා දැන් හිමිකම වල සාරාංශය කෙටියෙන් සාරාංශ කරයි.
 - 피고 대리인,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වින්තිකරුගේ නීතිඥවරයා වින්තියේ සාරාංශය කෙටියෙන් සාරාංශ කරයි.

(재판부주도형)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주장이시죠? 또한 미성년인 자녀, 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맞나요?

- 피고 답변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분할할 재산도 없다는 주장이시고, 만약 이혼이 된다면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맞나요?

වින්තියේ දී වින්තිකරු කිසි විටකන් පූලිකිලිකරුට පහර දී නැති නිසාත්, වින්තිකරුට බෙදීමට දේපළක් නොමැති නිසාත් දික්කසාදය සහ වන්දි සඳහා වන ඉල්ලීම අධිකරණය විසින් ප්‍රතිශේෂ කළ යුතු බවට වින්තිකරු තරක කරයි. වින්තිකරු තරක කරන්නේ, පාර්ශවයන් දික්කසාද වුවද, වින්තිකරු දෙමාපියන්ගේ අධිකාරිය ඇති තැනැත්තා සහ දුරුවන්ගේ හාරකරු ලෙස නම් කළ යුතු බවයි. එය නිවැරදි?

- 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죠?

법정통역인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일치하는 것은 맞나요?

법정통역인은 당사자의 의사 전달을 돕고, 이해를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 그렇다면 쟁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산분할 여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누구로 하여야 하느냐가 되겠군요.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원고(피고) 대리인, 여기까지 내용 중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는지요?

법정통역인은 당사자의 의사 전달을 돕고, 이해를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 원고 대리인부터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취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통역인은 당사자의 의사 전달을 돕고, 이해를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 피고 대리인, 원고가 신청한 서증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현재 원고가 자녀를 돌보고 있어서 피고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우리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먼저 이수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다음 기일은 가사조사가 완료된 후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제2회 변론기일

- 지난 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은 ○○이었고, 이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암흑기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법원은 ○○이라는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 날은 ○○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 3월 30일에 ○○이라는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 날은 ○○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 원고, 피고 대리인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그러면 ○○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증인은 대동할 계획이신지요?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증인에게 내용을 물어보는 데에 몇 분쯤 걸릴까요?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당사자가 추가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증인 ○○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음 기일까지 채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다음에는 ○○쟁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 그럼,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통역인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할입니다.

제3회 변론기일

සාක්ෂි ලබාදුන්නාට ස්වත්තියේ. නැවත වරක් දුර බැහැර සිට සාක්ෂි ලබා දීම පිළිබඳව අපගේ කෘත්‍යාත්මක පුද් කර සිටිමූ ස්වත්තියේ.

(조정위원회/수소법원 조정 등 판단, 고지)

- ○○에 비추어 화해를 시도해 봄이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 웃 앙숙을 쓰면서 화해를 시도해 봄이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 웃 앙숙을 쓰면서 화해를 시도해 봄이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 다음 기일까지 서로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미리한 번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리한 번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는데요,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는데요,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는데요,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변경증결후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그럼 오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변론을 종결하고,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결은 3주후인 ○월 ○일 ○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판결문은 주소지로 송달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판결선고기일

2015드단12345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5 ජාතික 12345 රුපු සිද්ධියේ තුව තීන්ට්ව ජ්රේකුඩයට පත් කිරීත ඇත.

(주문 낭독)

사. 판결선고

-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한다.
 - 대표적이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 විත්තිකරුට (ඇය හේ ඔවුන්) වැඩිහිටියෙකු වන තෙක් පහත සඳහන් නියමයන්ට අනුකූලව මෙම නඩුවට අදාළ බාල වයස්කරු / ලමයින් බැලීමට පැමිණිය හැකිය.

 - 1) සැම මසකම 2 වන සහ 4 වන සත්වල සෙනසුරාද 10:30 සිට 17:30 දක්වා.
 - 2) යොල් (වන්ද අපුරුෂ අවුරුදු) නිවාඩු දිනවලදී දෙකක් සහ වුසොක් නිවාඩු කාලය තුළ තවත් දින දෙකක් සඳහා
 - 3) එම පැමිණීම සඳහා, විත්තිකරු මෙම නඩුවට අදාළ බාල වයස්කාර දරුවා / දරුවන් ඔහුගේ (ඇයගේ) පදිංචි ස්ථානයෙන් රැගෙන ගෞස් ඔහුව (ඇයව) නැවත එම වාසස්ථානයට ගෙන ආ යුතුය.
 - 4) මෙම නඩුවේ බාල වයස්කරු / ලමයින් වැඩින විට, ඉහත සඳහන් කාලසටහන හා ක්‍රියාවලිය අනෙකුත්තාය මතය විමසීම තුළින් වෙනස් කළ හැකිය. එම කාලසටහන හා ක්‍රියාවලිය ක්‍රියාත්මක කිරීමේදී දෙපාර්තමේන්තු ප්‍රධානියාගේ (ප්‍රධානියන්ගේ) කැමුත්තට ගරු කළ යුතුය.

- පැමිණිලිකරු විත්තිකරුට ඇති ඔහුට (ඇයට) පැමිණීමට ඇති අයිතිය ක්‍රියාත්මක කිරීම සඳහා විත්තිකරු සමඟ ක්‍රියාකාරීව සහයෝගයෙන් කටයුතු කළ යුතු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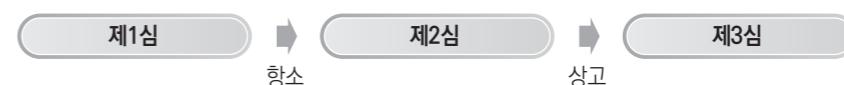
8. 소송비용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නඩු වියදම් වලින් 1/3 ක් (නෙනෙන් එකක්) පැමිණිලිකරු විසින් දැරිය යුතු අතර ඉතිරි මුදල විත්තිකරු විසින් දැරිය යුතුය.

9.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සහ 6 ජේද අවස්ථානුරූප ක්‍රියාත්මක කිරීමට යටත් විය හැකිය.

아. 불복절차(상소절차)



-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항소기각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판 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 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다. 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한다.
-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 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 사건이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판결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는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절 ● 기타 안내

1.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 국적취득 또는 국내체류자격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고, 법무부의 소관이다.
- 국적취득 및 국내체류에 관하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가. 통역 지원

- 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통역인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된다.
-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다.

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한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용 어 정 리

- **위자료 청구** :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친권**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친권자는 ① 자녀의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징계, 영업허락 등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②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 **양육권** : 실제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양육할 권리이다.
-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한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연락이 끊지 않아 자녀의 학교 입학문제, 여권 발급, 휴대폰 구입, 보험 체결 등 실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는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접, 교통(왕래),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부부관계의 단절이 부모-자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와 양쪽 부모의 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의 이혼 후 원활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도 자녀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면접교섭권 협의시 고려사항** : ①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한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를 정하고, 정해진 면접교섭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대방 부·모

에게 꼭 먼저 알려야 한다. ②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영유아기 자녀의 숙박 여부는 기존의 부모관계와 양육환경,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비양육자인 부모와 숙박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학교, 과외활동, 학원 등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자녀를 데려다 주고, 데려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한다.

- **양육비** : 아이들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날짜, 지급 액수,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전처분** :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①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②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③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된다.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 ②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료, 도박중독치료 등

법정 통역인 편람

인 쇄 2020년 5월

발 행 2020년 5월

발행처 법원행정처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